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계획



2022. 3.

순창제일고등학교

I

목적 및 법적 근거

1.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할 확대
3. 가정-학교 간 소통 활성화 및 협력관계 구축
4. 학부모 역할 정립 모색 및 역량 강화
5. 학부모교육 및 교육 기부 기회 확대

II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계획

과정	내 용	비고
선출관리 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3명, 교원위원 3명 • 역 할 : 후보자 등록, 선출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 선출업무 총괄 • 주 체 : 학부모회 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로 구성(피선거권 제한) 	
선출홍보 ·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선출 일시, 장소, 방법, 선출인원 안내 • 학부모회 임원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 등록기간, 등록장소, 입후보신청서 등 •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방 법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앱 등 홍보 및 공고 	
선거인 명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후보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신청서(회장, 부회장(총무 겸임), 1,2,3학년 대표) •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후보등록 접수대장에 등록 후 후보등록 접수증 교부 	
선거 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경력, 소견 등)을 홈페이지에 공보 •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투표용지 · 투표장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인명부 확인 • 후보자 기호, 이름, 기표란 기재 •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 날인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설치 • 학교 앱을 통한 전자 투표 가능 	

투표실시 · 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 당일 투표하기 전 입후보자 소견발표 • 선거인 명부 확인 및 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투표 마감 후 개표(선출관리위원회 주관) • 학부모 참관인이 임석하고 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개표 • 학교 앱을 통한 전자 투표 실시 후 선출관리위원회 책임 하에 공개 	
당선자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 부회장, 1,2,3학년 대표에게 당선사실을 공고 	
선거결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 앱 등으로 안내 	

**세부 운영 계획

1. 학부모회 선출 대상 :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년대표 3인(1~3학년)
2. 선거 방법 : 재학생을 기준으로 자녀 한명 당 가구 내 투표권(1인 1표)을 행사하되, 자녀수가 2명일 경우 학부모 1명이 참석한 경우는 투표권 1표, 학부모 2명이 참석하면 학생수가 2명이므로 각각 1표씩 1표 행사하며, 투표 양식은 기표식으로 함(학교 앱을 활용한 전자 투표)
3.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 공고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3월 30일(수)
선거 공고 - 4월 1(금)
4. 후보 등록 : 4월 1일(금) ~ 4월 4일(월) 까지
5. 후보 기호 추천 : 후보자 등록 순으로 기호 부여
6.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름, 경력, 소견 등) 공보 : 4월 5일(화)
7. 선거인명부 작성 : 4월 4일(월) ~ 4월 5일(화)
8. 투표 일자 : 4월 6일(수)
9. 투표 방법 : 학교앱(아이엠스쿨)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
10. 당선자 발표 : 4월 7일(목)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 앱 등을 활용하여 안내]
11. 기타사항 : 후보등록 마감일 기준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함
12. 후보등록처 :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SNS 후보 등록 방식

3.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가. 구성

- 임원단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 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함
-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3인, 학부모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학년별 1인씩 구성
- 선거일 공고일에 선출관리위원명단을 서식에 따라 공고

나. 기능

- ① 선출홍보 및 공고에 관한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업무
- ② 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 ③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명부 확정
- ④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
- ⑤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업무
- ⑥ 선거의 공보에 관한 업무
- ⑦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
- ⑧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 ⑨ 당선자 공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 ⑩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업무

다. 선출관리위원회 명단

구분	직책	성명	비고
학부모위원	1학년 대표	김양희	
학부모위원	2학년 대표	이옥란	
학부모위원	3학년 대표	김희정	위원장
교원위원	1학년 부장	조진성	
교원위원	2학년 부장	김소영	
교원위원	3학년 부장	김홍택	
간사	교무부장	이유섭	

[붙임 제1호 서식]

선출관리위원 공고

2022년 0월 00일에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출관리위원회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월 00일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 위 원 명 단 >

직책	구분	성명	비고
위원장			
위원			

[붙임 제2호 서식]

학부모회 임원 선출 일정 공고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월 00일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선출관리위원회

1. 입후보 등록

- 가. 자격 : 본교 학부모
- 나. 장소 :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실)
- 다. 기간 : 20__년 ○월 ○일부터 ~ 20__년 ○월 ○일 까지(○일간)
- 라. 구비서류 :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 1통(가정통신문 또는 학교앱)

2. 임원 선거

- 가. 선거일시 : 20__년 ○월 ○일 (○요일) ○○:○○
- 나. 선거장소 : ○○학교 ○○실
-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라. 학부모회 임원 정수 : ○명
- 마. 소견발표 : 선거전 후보 1인당 ○분 내외 소견 발표
-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__년 ○월 ○일 ~ ○월 ○일 (○○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붙임 제3호 서식]

선거인 명부

학년 반

※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석부 사본으로 대체 가능함 (단, 서명란이 들어가 있을 것)

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022학년도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학년대표)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기호	이름	연령	성별	경력	입후보 소견	자녀 학년반

20__년 ○월 ○일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20__년 ○월 ○일 학부모회 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직위	이름	성별	자녀 학년 반	비고
회장				
부회장				
1학년대표				
2학년대표				
3학년대표				

2022년 ○월 ○일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투 표 용 지

2022학년도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 선출 투표용지

기 호	이 름	기 표 란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2022학년도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선출 투표용지

기 호	이 름	기 표 란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당 선 통 지 서

당 선 통 지 서

이름 ○ ○ ○

귀하께서는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학년대표)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22년 ○월 ○일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관리위원장 (인)

순창제일고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거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 내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 임원단을 선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학부모회 임원단(이하 "임원단"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① 학부모 회장 : 1인
- ② 학부모 부회장 : 1인(총무 역할 겸임)
- ③ 1학년 대표, 2학년 대표, 3학년 대표 학부모 각 1인

제3조【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① 임원단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선출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 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3인, 학부모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학년별 1인씩 구성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구성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위원 명단을 선거 공고 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1 : 선출관리위원 공고\]](#)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⑥ 선출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선출홍보 및 공고에 관한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업무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명부 확정
4.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
5.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업무
6. 선거의 공보에 관한 업무
7.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
8.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9. 당선자 공고 및 통보에 관한 업무
10.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업무

⑦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4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전 5일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2 : 선거 일정 공고]

제5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순창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선거방법】 투표방법은 ①직접투표, ②직접투표·가정통신문·우편투표 병행 및 ③온라인 투표(학교 어플) 중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제7조【후보자 등록】

- ① 후보자 등록 공고 일자 및 기간은 선출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 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된다.
- ③ 후보자 등록의 자격은 우리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규정한다.
- ④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에 의한다.
- ⑤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제8조【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 또는 유선에 의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제9조【선거인명부 작성】

- ①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각 학년부장 교사가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을 작성한다.
- ②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당선 확정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인명부 수정 및 확정】

- ①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교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교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제11조【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 앱을 통

하여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제12조【소견발표】

- ① 후보자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소견발표를 실시한다.
- ② 소견발표는 1인당 3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입후보등록순서로 한다.
- ③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후보등록서에 작성한 소견 내용으로 대체한다.

제13조【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양식은 기표식으로 한다.
- ② 투표권은 우리학교 재학생의 모든 학부모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며, 가구당 1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 ③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학부모 1명이 참석한 경우는 투표권 1표, 학부모 2명 이상이 참석하면 학생수가 2명이므로 각각 1표씩 2표 행사, 3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 중이여도 최대 2표만 부여한다.
- ④ 투표용지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⑤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4조【투표의 진행】

- ①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제15조【투·개표참관인】

- ① 투표와 개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시킬 수 있다.
- ② 참관인에게는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 ③ 투·개표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 또는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투·개표참관인은 투표와 개표 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개표소의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 부터 7일 이후에,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7일 이후에 선출 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8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다득표를 획득한 후보자로 결정하며,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교 앱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①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사항】 기타 1~19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후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안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